CONTENTS

제 성 중공수택 디모델당이	난!
 리모델링의 개념 리모델링의 정의 리모델링의 범위 리모델링시 적용완화 리모델링 제도의 변천과정 리모델링과 재건축 정비사업 비교 	03
 리모델링의 유형 리모델링 기본계획 맞춤형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06
데2장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 시	나업은?
 서울형 리모델링이란? 1) 서울형 리모델링의 정의 2) 시범사업 추진의 목적 	10
2. 우리 시 지원내용 및 추진절차	11
1) [지원1] 초기사업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 2) [지원2] 시범단지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및 / 3) [지원3] 리모델링 조합설립 단지에 대한 4) 시범사업 추진절차	나업타당성 분석"
3. 리모델링 기대효과	14
1) 주거기능 향상2) 에너지비용(관리비)절감3) 구조안전성 확보(내진성능 보강)4) 지역과 함께하는 아파트단지(도시재생)	
4. 자주하는 질문 (FAQ)	16

<u>제1장</u>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란?



1. 리모델링의 개념

1) 리모델링의 법적 정의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한 ① 대수선 또는 ② 증축을 하는 행위

2) 리모델링의 범위

증축범위

• 대상: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 증축범위

1) 전용면적(세대당 면적)

- 85㎡미만 : 40% 이내 - 85㎡이상 : 30% 이내

2) 세대수: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전용면적 증가 총면적 내에서 가능)

3) 수직증축 : 14층 이하 2개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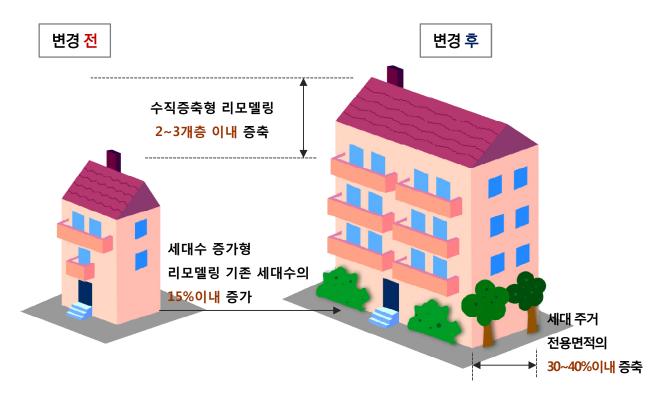
15층 이상 3개층 이내

(단, 건축 당시 구조도 보유 필수)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 30㎡이상 내력벽 증설 및 해체
- 3개 이상 기둥, 보를 증설 또는 해체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 증설 또는 해체
- 주계단·피난계단 등의 증설 또는 해체
- 외벽 마감재료 증설 또는 해체 등
 - ※ 단,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별표4]



3) 리모델링시 적용 완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서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리모델링 시 건축법 적용완화 조경, 공개공지,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제한, 일조권(채광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등 ※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범위 결정

4) 리모델링 제도의 변천과정

리모델링 제도는 2001년 처음 『건축법』에 도입한 후, 2003년 『주택법』에 도입되었고, 2005년 증축형 리모델링 허용, 2013년 3개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였음

• '12년 : 세대수 증가 10% 허용

• '13년 : 세대수 증가 15% 및 3개층 수직증축 허용



5) 리모델링과 재건축 정비사업 절차 비교

리모델링은 노후 주택의 유지보수의 관점에서 인허가가 진행되므로 재건축과 달리 도시계획적 요소인 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없는 반면,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의 절차가 중요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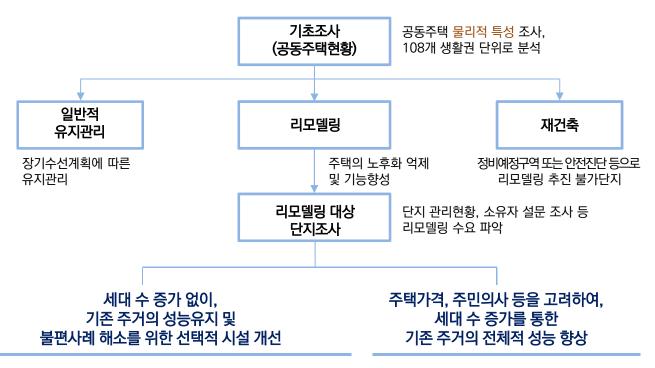
총 사업기간은 통상 재건축 대비 3~4년 정도 짧음

	재건축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추진 위원회/입주자 대표회의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인가
안전진단 (1차)	
건축·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권리변동계획수립	
사업계획(행위허가) 승인	사업시행인가
분담금 확정 총회	관리 처분계획
이주	이주 및 철거
안전진단 (2차)	
착공	착공
준공 (사업검사)	준공인가
준공 후 입주 및 청산	준공 후 입주 및 청산

2. 리모델링의 유형

1)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



맞춤형 리모델링 (저비용)

전면교체형 리모델링 (고비용)

대수선	기본형	세대구분형	커뮤니티형 (일부증축)	수평 증축 형	수직증축형	별 동증 축형
대수선	대수선+ 주치장 확충	단지세대수1/3 내 멀티홈	기본형+ 커뮤니티시설	평면 증 축	2~3개층 내 증축	딘지 여유부지 별 동증축
주요구조물 (기둥,보내렴벽) 3개이상수산.변경	주가환경개선및 주차난해산를위한주 차장확보				1 1 1	7.000

[참고] 그린 리모델링

에너지 효율 등을 제고하여 주택의 유지보수비 및 관리비 등을 절감하는 리모델링으로 맞춤형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모두 적용 가능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x27; 민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에너지 성능개선(단열보완, 창호 성능개선 등) 공사비용을 대출받을 경우. 그 이자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켜주는 이자지원 사업

2) 맞춤형 리모델링

대수선형 [주요구조물 3개 이상 수선·변경]



- 세대수 증가 없이 발코니 확장 또는 불편사례(노후 배관교체, 화장실·방 및 단열재,흡음재 추가신설 등)를 선택하여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
- 소유자 부담가능 범위에서 사업진행 → 분담금 최소화
- 거주형 또는 단기 이주형 사업으로 단시간에 주택성능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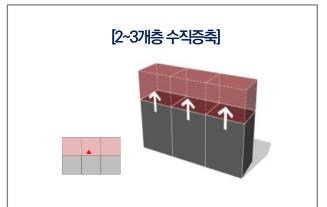
세대구분형 [멀티홈]



- 공동주택 **일부를 구분**하여 세대별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나, 구분된 공간에 대하여 별도로 소유할 수 없는 주택 (하나의 세대로 산정)
- 가능범위: 기존 세대수 및 총 전용면적의 1/3이하 로 함 (전 세대 불가)

3) 전면교체형 리모델링

수직증축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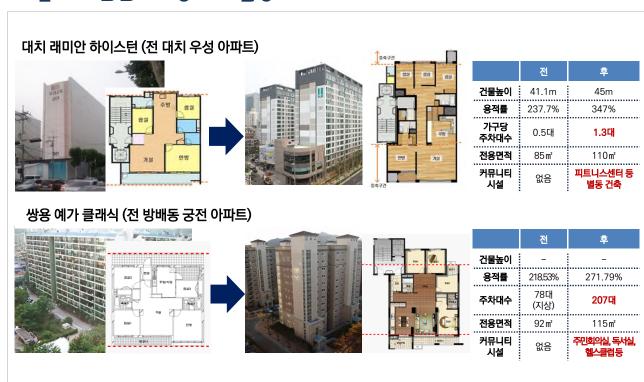
• 기존 단지 배치를 유지하여 조망확보 및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으며, 세대증가에 따른 일반분양물량을 통하여 사업비 조달이 가능

수평증축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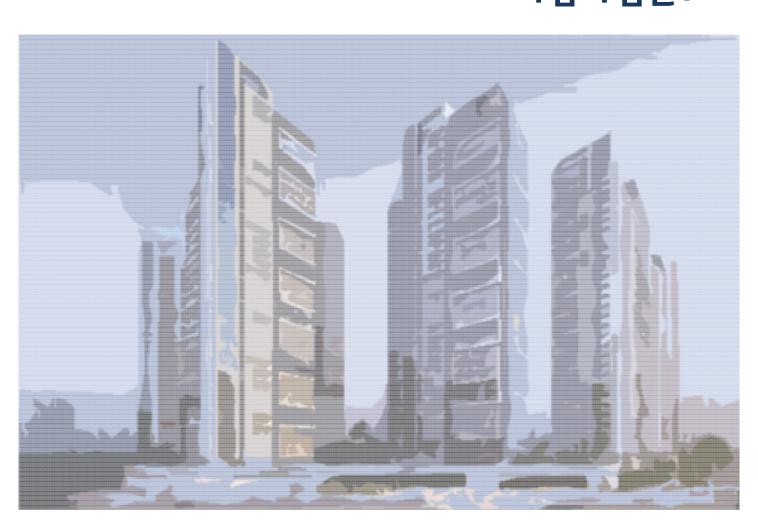


• 증축 부분의 하중이 수평으로 증가하여 수직 증축에 비하여 보수보강비가 상대적으로 낮음

<참고 > 전면교체형 리모델링 사례



<u>제2장</u>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은?



1. 서울형 리모델링 이란?

1) 서울형 리모델링의 정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단지의 주거환경개선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유시설(커뮤니티시설 등)을 공공의 행정·재정 지원을 통해 설치함으로써 도시재생 관점의 리모델링 사업



2) 시범사업 추진의 목적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도시재생 관점에서 지역공유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과 함께 공유하는 서울형 리모델링의 성공적인 정착 및 확산을 유도하고자 함

합리적인 공공성 확보방안 마련

- ✓ 지역주민과 시설을 공유하는 유형 및 가이드라인 제시
- ✓ 공공기여에 따른 행정·재정 인센티브 제시

유형별 세부추진전략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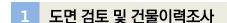
- ✓ 기초조사를 통해 서울형 리모델링에 적합한 단지 분석
- ✓ 단지 여건에 맞는 유형별 세부추진전략 수립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유도

- ✓ 주민 맞춤형 컨설팅지원 리모델링 사업 홍보 증대
- ✓ 공공, 민간 협력형 리모델링사업 활성화

2. 우리 시 지원내용 및 추진절차

[지원1] 초기사업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3 리모델링 방향 및 범위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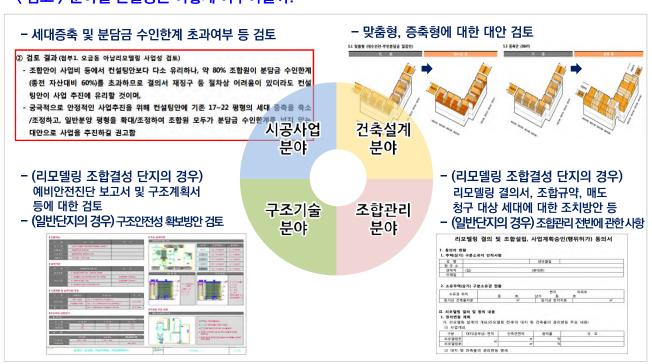
2 전문가 현장 방문



4 리모델링 추진 매뉴얼 작성



〈 참고 〉 분야별 컨설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지원2] 시범단지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분석"



1 단지 현황조사 실시



2 우리 단지에 맞는 리모델링 유형으로 기본계획 설계



3 주민들의 개별추정분담금 산정



o o o 님이 34평형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공사비 420만원(예시)과 리모델링 증축물량의 일반분양가 1,479만원(예시)이 만나는 1,49억원이 표준분담금입니다.

4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의견수렴



[지원3] 리모델링 조합설립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비용 지원"

■ 1차 안전진단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배정된 예산 범위 내)



4) 시범사업 추진절차

공고	시범사업 신청	신청서 접수	시범단지 선정	단계별 지원내용 실시
서울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조합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및 자치구

■ 단계별 지원 요건

1단계: 전문가 컨설팅 (초기사업방향 검토)

요건 :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조합 신청

2단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 분석

요건 : 시범단지로 선정된 단지 입주민의 동의율 10분의 1 이상 신청

3단계: 안전진단 비용 지원

요건: 리모델링 조합 결정 시 (현재 조합결성을 준비 중인 단지도 해당)

3. 리모델링 기대효과

1) 주거기능 향상

진부한 평면 혐소한 주거공간

소득수준 향상

주차공간 · 녹지 · 부대시설 부족 (90' 소형단지 – 세대당 0.5~0.6대)

삶의 질 개선

좀 더 넓은 집

- 20평 → 30평 (주거공간 확장)
- 1.2Bay → 3Bay 이상
- 침실 및 화장실 개소 증가

주차공간 확보

- 지상 및 지하주차장 확충
-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 및 녹지공간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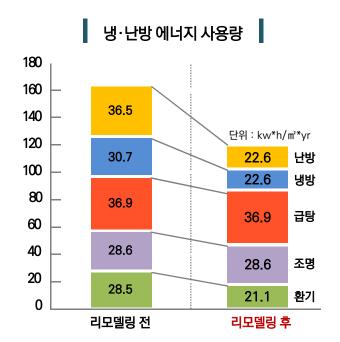
2) 에너지비용(관리비) 절감

주택노후화로 인한 에너지 효율 하락 냉·난방비 증가

단열성능 개선

관리비 절감

•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자료(우측) 리모델링 할 경우 난방에너지(38%)와 냉방에너지(35%) 사용량 절감 가능



3. 리모델링 기대효과

3) 구조안전성 확보(내진성능 보강)

내진성능 미비 현행구조기준 미달

내진성능 보강

튼튼한 아파트

- 수평증축 및 기존 골조 보강
- 현행 구조기준 확보

강화된 내진설계기준

'95년

- 6층 이상
- 100,000m²이상
 (규모 6.0 대비)

'05년

- 3층 이상
- 10,000㎡이상

'15년

- 3층 이상
- 500 m² 이상

2017년 • 2층 이상 • 200㎡이상 (목구조 500㎡이상)

- 기존 아파트는 강화된 내진기준에 미달
- •특히 '95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는 지진에 취약

리모델링을 통한 안전성 확보

4) 지역과 함께하는 아파트단지(도시재생)

리모델링시 계획지침 운용을 통해 가로활성화 등 도시재생

"단지 주변환경 개선"

담장허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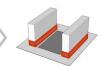




"가로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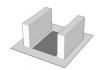
저층부 커뮤니티 시설 배치





"보행우선 단지 조성"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서울시 아파트 열린녹지 만들기 사업 사례 (담장 허물기)



• 리모델링 사례 옥수동 극동아파트



• 리모델링 사례 당산동 쌍용 예가 클래식 (옛 평화아파트)

4. 자주하는 질문 (FAQ)

O 시범단지로 선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 A 조합설립 전 리모델링 기본계획 및 개별추정분담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
 - 향후 우리 시 재정지원계획 확정 시 조합설립 이후 안전진단비용, 사업비 및 공사비 융자, 이차보전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음

Q 리모델링 사업계획서와 분담금은 어떻게 작성되나요?

- A 단지 물리적 조건 및 주민 설문을 통하여 유형별 설계(안)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개략적인 분담금을 추정
 -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 수렴 및 사업계획서를 확정함

Q 시범단지로 선정되면 모두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해야 하나요?

- A 「주택법」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는 소유자가 선택
 - → 조합설립은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 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 허가)은 소유자 75% 이상 동의 필요

이 리모델링을 할 경우 재건축 연한이 변경되나요?

▲ • 재건축 연한은 최초 준공일 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리모델링 여부와 관련 없음

O 소형, 중대형(평수) 혼합단지에서 증축형과 맞춤형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A • 주민 다수 의견에 다라 결정 가능한 사항이며, 다만, 증축형과 맞춤형 선택에 따라 분담금 등이 달라 질 수 있음

O 조합설립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왜 필요한지?

▲ • 소유자 의사를 반영하고 조합설립을 위한 과도기적 주민대표기구 필요 : 조합설립 후 자동해산 (리모델링은 정비사업과 달리 추진위원회 규정이 없음)

○ 준비위 위원은 조합임원(조합장)으로 바로 선출(추인) 될 수 있는지 여부?

- A 조합임원은 조합총회를 통하여 선출되어야 하므로 준비위 임원이 조합임원으로 선출(추인) 될 수 없음(준비위 위원은 조합임원 선거에 출마 가능)
 -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임원 선거 진행 (선거관리위원은 조합임원 선거 출마불가)